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수원지방검찰청

### 평택지청

전문공보관 형사1부장 유정호  
전화 031-8053-4308 / 팩스 031-8053-4655

## 보도자료

2021. 9. 29.(수)

# 제 목 주한미군의 어린 아들을 살해한 필리핀 국적자 구속 기소

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  -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- ※ 2021. 9. 27. 개최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
- 전일(9. 28.) 수원지검 평택지청(지청장 박윤석)은 3세 아동(주한미군의 아들)인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, 바닥에 집어던져 살해한 필리핀 국적의 피고인을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음
- 검찰은 송치 후 디지털 포렌식, 정신과 및 법의학 자문 등 추가수사를 통하여,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상세한 범행방식을 규명하는 한편, 피해자의 형(7세)에 대한 정신적 학대행위를 추가로 인지함
-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하고, 피해자의 형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임

## 1 피고인 및 피해자

- 피고인 : A○○ [필리핀 국적, 구속] ※ 2013.경 입국
- 피해자 : B○○ [당시 3세, 사망]  
C○○ [당시 7세, B○○의 친형] ※ 피해자들은 주한미군의 자녀

## 2

### 공소사실 요지

- '21. 9. 4. 22:20경 피해자들의 부친인 D○○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을 돌보던 중, 피해자 C○○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
  - 2021. 9. 5. 04:30경 피해자 B○○을 부엌칼로 1회 찌르고, 피해자를 집어던져 사망하게 하여 [살인]
  - 위 장면을 피해자 C○○이 지켜보게 하여 [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]

## 3

### 주요 수사경과

- '21. 9. 5. 112신고 접수
- '21. 9. 6. 피고인 구속
- '21. 9. 9. 검찰 송치
- '21. 9. 9.~9. 24. 송치 후 보완 수사, 추가 인지
- '21. 9. 28. 피고인 구속 기소

## 4

### 수사 결과

#### ① 범행 동기 및 경위

- 피고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'B○○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, 교회에 바치기 위해 집어 던졌다'면서 마치 종교관 및 정신이상을 이유로 B○○을 살해한 것처럼 진술하여 피의자 주장에 따라 범죄사실이 구성되어 송치됨
  - ※ 이와 관련하여, '21. 9. 6. 이후 “악령 씌어서”, “천국 보내려”, “나체 활보” 등의 문구가 포함된 제목으로 다수 언론 보도가 이루어짐
- 이에 검찰은 추가증거 분석 및 자문을 통해 피고인이 종교적으로 심취했던 것은 아니고, 평소 폭력성향이 있었음을 확인하고, 부검결과와 법의학 자문을 근거로 사인(두부 손상) 및 범행방식을 규명함

## ②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인지함

- B○○의 형인 C○○은 친동생이 사망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본 것으로 이는 그 자체로 중대한 정신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하여 추가 인지함

## 5

### 향후 계획

- 검찰은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**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할 예정임**
- 향후 피해자 및 유족 진술 상세히 청취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 측 심리치료 지원, 법정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임 ☑